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도로교통법」상 차 또는 노면전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사진,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면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, 이륜자동차등의 중앙선 침범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없어 이를 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이륜자동차등 중앙선 침범 과태료 금액 규정(별표 6)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, 10월 중 실시 예정

대통령령 제 호

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별표 6 제2호의 과태료 금액란을 “1) 승합자동차등: 10만원 2) 승용자동차등: 9만원 3) 이륜자동차등: 7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		수 정 안		
[별표6] 과태료의 부과기준 (제88조제4항 본문 관련)			[별표6] 과태료의 부과기준 (제88조제4항 본문 관련)		
위반행위 및 행위자	.	과태료 금액	위반행위 및 행위자	.	과태료 금액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 가.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차	.	1) 승합자동차 등 : 10만원 2) 승용자동차등 : 9만원	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 가.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차	.	1) 승합자동차 등 : 10만원 2) 승용자동차등 : 9만원 3) 이륜자동차등 : 7만원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통기획과	
연 락 처	02 - 3150 - 0659